

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06. 10. 25.

제안자 : 조영재의원 외

수정 이유

-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 협의회 장의 명칭 “의장”과 협의회 위원인 도의회 의장, 교육위원회 의장 등 직위명칭이 혼동의 소지가 있어 협의회 장의 명칭을 “회장”으로 수정하고자 함.

수정 주요내용

-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의 장의 명칭 “의장”을 “회장”으로 수정
(안 제3조, 제5조, 제6조, 제9조, 제12조)

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“의장”을 “회장”으로 한다.

안 제5조의 조의 제목과 제1항 및 제2항 중 “의장”을 “회장”으로 한다.

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의장”을 “회장”으로 한다.

안 제9조제2항 중 “위원장”을 “회장”으로 한다.

안 제12조 중 “의장”을 “회장”으로 한다.

수정안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3조(구성) ①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 하여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협의회 의장은 충청북도지사로 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도지사가 위촉한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제5조(의장의 직무) ①의장은 협의회를 대표 하며, 회의를 총괄한다.</p> <p>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 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제6조(회의) ①의장은 협의회를 소집하 고, 그 의장이 된다</p> <p>②협의회 회의는 연1회 개최를 원칙 으 로 하며,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9조(고문) ①(생략)</p> <p>②고문은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조 등 협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의 자문 에 응하며, 위원장은 자문사항 에 대하여 협의회 운영에 이를 적 극 반영하여야 한 다.</p> <p>제12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 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의장 이 정한다.</p>	<p>제3조(구성) ①-----회장----- -----</p> <p>②---회장----- -----</p> <p>1. ~ 6.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제5조(회장-----) ①회장----- -----</p> <p>②회장----- -----회장----- -----</p> <p>제6조(회의) ①회장----- --- 회장-----</p> <p>②----- -----</p> <p>회장----- ③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제9조(고문) ①(제정안과 같음) ②----- -----회장 -----회장-----</p> <p>제12조(운영세칙)----- ----- -----회장-----</p>